#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09. 2.외교통상통일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년 7월 2일

송영선의원 등 12인

- 2. 회부일자 : 2008년 9월 1일
- 3.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278회국회(정기회)
    -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년 11월 17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년 12월 8일) 수정의결
  - ㅇ 제281회국회(임시회)
    -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년 2월 6일) 수정의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송영선의원)

## 1. 제안이유

남북 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남북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 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1)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2)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함(안 제3조제3항).

- (3)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1회 진행경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4)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5)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 (6)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 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 (7)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생사 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2 항).
- (8)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전화통화,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상봉 후 교류지속, 긴급가사방문,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 (9)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10)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 (11)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지 성 배)

금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각급 남북회담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의 의무적 의제 화(안 제3조제3항),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민간차원의 이 산가족 교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현재 이산가족 규모는 조사시기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하면 약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sup>1)</sup>, '88년부터 '08년 10월말 현재 통일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남북이산가족은 총 127,308명임. 제1차 상봉('00.8)부터 제16차 상봉('07.10)까지 총 16,212명이 상봉한 바 있음. '09년도에는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을 위해 대면상봉 45억원, 화상상봉 18억원, 영상편지 교환 4억 5,000만원 등 총 67억 5,000만원이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음.

한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남북 이산가족은 총 127,308 명 중 70세 이상이 73.9%에 이르는 등 고령화되었고, 특히 사망자도 38,249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를 조속히 확인하고,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을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sup>1)</sup> 통계청 71만 6,000명('05년), 법원행정처 62만 6,000명('00년)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 법률안은 의미가 있다 고 하겠음.

다만,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 및 상호 교류는 남북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측의 입법만으로는 그 실효성 담보에 일정부분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임.

## < 이산가족 연령별 현황 >

구 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3,172	26,297	36,302	14,647	8,641	89,059
신청비율(%)	3.6	29.5	40.8	16.4	9.7	100.0

한편, 이 법률안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sup>2)</sup>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가. 국가의 책무(안 제3조제3항)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 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규정함.

<sup>2)</sup>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급 남북회담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 안의 의무적 의제화를 규정한 것은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다만, '07년도의 경우 정치분야 13회, 경제분야 22회 등 총 55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군사 분야 회담과 같이 의무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화하기에 어려운 회담이 있을 뿐만아니라, 남북회담시 의제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할 경우 대북 협상에 어려움도 예상되어, 이를 임의 규정화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07년도 분야별 남북회담 현황 >

정치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인도ㆍ사회 분야	계
13	11	22	9	55

# 나.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통일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면서, 동조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인원확대 및 정례화 등 10가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1회이상 진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첫째,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집행계획을 함께 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본 제정법률안은 집행계획은 없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만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례로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3)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임.

둘째,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인원확대 및 정례화, 남북 이산가족간 서신교환·통신 등 교류수단의 확보 및 운용 등 10가지 사항을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토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이 담보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임. 당국차원에서의 서신교환의 경우 북한측의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04년 이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실정임.

<sup>3)</sup>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 ③ (생 략)

## < 이산가족 교류 현황(당국차원) >

(단위: 건)

구 분	'04	'05	'06	'07
생사확인	681	962	1609	1,196
서신교환	_	-	_	_
방남상봉	_	-	_	_
방북상봉	400	397	594	388
화상상봉	-	199	80	278

## 다. 6개월 이내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통보(안 제7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함과 아울러, 동조제2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제6조4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규정함.

특히, 동조제2항에서처럼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의 의무적 통보 조항을 마련한 것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치유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sup>4)</sup> 제6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의 문제도 결국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 규정화하는 것이적절한지에 관하여서는 검토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됨.

## 라. 북한지원에 대한 사전 국회 보고(안 제9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 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제2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제1 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제1항에서처럼 통일부장관이 생사확인 등에 필요한 물자 등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북한의 생사확인 등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봄.

다만, 동조제2항에서 그 지원을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한 것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지원 규모 등과 관련없이 모든 지원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이산가족 교류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관하여서는 재검토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됨.

참고로, 개별지원 사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류협력추진협의회5)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음.

#### <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 대북 지원6) >

구 분	금 액
남북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	5억원 이상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 비용	5억원 이상
교역촉진 소요 자금 융자	30억원 이상
경제분야 협력사업 소요 자금 융자	50억원 이상

## 마. 남북 이산가족 민간 교류 경비 지원(안 제10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남북이 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첫째, 현재 이산가족 교류는 민간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안 제10조제1항의 의무적 지원 규정은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sup>5) -</sup> 근거 : 제4조(남북과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중요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둠)

<sup>-</sup> 구성 : 제5조(통일부장관인 위원장 포함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 13명, 민간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

<sup>-</sup> 기능: 제6조(협력사업 총괄 및 조정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제4항))

<sup>6)</sup>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다만, 이러한 의무적 지원 규정은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부적절한 알선·중개 행위의 증대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 이산가족 교류 현황(민간차원) >

(단위: 건)

구 분	'04	'05	'06	'07
생사확인	209	276	69	89
서신교환	776	843	449	413
제3국 상봉	187	94	50	53
방북상봉	1	1	4	1

참고로, '0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당국차원의 이산가 족상봉행사 소요 경비로 67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민 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으 며, '00 이후 '07년까지 민간차원의 교류경비 지원실적은 27억 9,800만 원임.

## < 민간차원 교류경비 지원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건 수	314	279	287	466	303	289	201	151	2,290
금 액	279	349	440	692	364	252	235	187	2,798

둘째, 동조제4항에서는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관한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Ⅳ.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V.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황진하 위원)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하되, 일주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한다"는 의무규정을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함.

둘째,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셋째, 통일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로 규정함.

다만, 본 법안의 경우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하나,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Ⅵ. 심사결과 : 수정의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IX.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X.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부분 포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08. 2.

제 안 자:외교통상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남북회담시 의무적인 의제 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임의화하고,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례화하며, 통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통일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며, 기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가.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나.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이 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4항)
- 라. 통일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 14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안 제3조 내지 제11조는 각각 제4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4조(종전의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라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3호 내지 제6호·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제9호·제10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라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 식 다양화 방안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의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로 한다.
- 안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종전의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

- 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 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을 "민간교류경비지원"이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민간교류경비지원에 대한 지원요건 · 절차 · 금액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를 "이산가족교류단체지원"이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이라 하여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절차·자격"을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절차"로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 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권한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16조(종전의 제13조)의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지원금을 받은 때
-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안 부칙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이라 한다.

## < 수정안조문대비표 >

워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1 · 2 (원안과 같음)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 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 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 의 친 ·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 신 · 전화 · 통신 · 방문 · 재 회 · 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 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 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 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 제4조(국가의 책무) ① (원안과 같 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음) 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

수 정 안

----- 뜻은\_-----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 용한다.

아 워

수 정 안

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 책을 수립 ·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 령화를 감안하여 신속하고 효과 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 야 한다.
- ③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ㆍ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 제4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제5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 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 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 태조사 및 정보관리
  -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 3.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 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 다.
-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획)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 진 기본계획-----
- 1. (원안과 같음)
-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삭 제>

원 안	수 정 안
인원확대 및 정례화	
4. 남북 이산가족 상봉 후 교류	<u>&lt;</u> 삭 제>
지속을 위한 방안	
5. 남북 이산가족간 서신교환ㆍ	<u>&lt;삭 제&gt;</u>
통신 등 교류수단의 확보 및	
<u> </u>	
6.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u>&lt;삭 제&gt;</u>
행정절차의 간소화	
7.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u>3.</u> (원안과 같음)
교류활동 지원	
8.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u>&lt;삭 제&gt;</u>
위한 대북 협상	
9.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	<u>4.</u> (원안과 같음)
화에 따른 긴급 대책	
<u>10</u> .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	<u>5</u> . (원안과 같음)
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상 진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하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	· ② (원안과 같음)
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원 안	수 정 안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 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 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 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 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 조사 및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안과 같음)

아 워

수 정 안

제6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원 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 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②-----제6조에 따른 실태조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으로 확 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 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① 제9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 ② (원안과 같음)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

안과 같음)

사 결과에 따라-----

③ (원안과 같음)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워 아 수 정 아 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야 하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야 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이 상봉을 한 경우에도 추가적 협의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북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 · 운영하 한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④ · ⑤ (원안과 같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 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긴급가사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남 <삭 제> 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 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 부장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 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 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0조(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 제11조(민간교류경비지원) ① 통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이산가 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 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일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 정 안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 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 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 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하다.

일부장관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 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 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 비(이하"민간교류경비"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워 아 수 정 안 ③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삭 제>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 에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절 ② 민간교류경비지원에 대한 지 차 · 자격 · 금액 등 그 밖에 필 원요건·절차·금액 등 그 밖에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다. 한다. 제11조(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 ① | 제12조(이산가족교류단체지원) ①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 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 을 주선하는 민간단체(이하 "교 류주선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삭 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삭 제>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 에 교류주선단체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절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차 · 자격 · 금액 등 그 밖에 필 대한 요건·절차-----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원 안	수 정 안
<u>&lt;신 설&gt;</u>	제13조(권한의 위탁) 통일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 의제) 제13조의 규정에 의
	해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
<u>세13조</u> (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제16조(벌칙)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남북이산가족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민간교류경비를 지급받은 때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1조에 따른 교류주선단체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
지원금을 받은 때	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부 칙	부 칙
<b>一</b> 一一一	T

원 안	수 정 안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① (원안과 같음)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통일	②(경과조치)
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	
는 이 법 <u>제6조제1항</u> 의 신청을 한	<u>제7조제1항</u>
것으로 본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 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

- 립·집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다양화 방안
  -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 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 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교류경비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민간교류경비지원에 대한 지원요건·절차·금액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산가족교류단체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 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절차·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 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지원금을 받은 때
-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이 법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